

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축의·부의금품 등의 금액 범위

(제19조의3제3항 관련)

관련 조항	구분	통상적인 범위	의례적인 선물의 범위
제19조의3제2항제2호나목	○ 관혼상제의식에 제공하는 축의·부의금품	○5만원 이내	
제19조의3제2항제2호다목	○ 관혼상제의식,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·조객 등에 대한 음식물 제공	○3만원 이내	
	○ 관혼상제의식, 그 밖의 경조사 참석 하객·조객 등에 대한 답례품 제공	○1만원 이내	
제19조의3제2항제2호라목	○ 연말·설 또는 추석에 제공하는 의례적인 선물		○3만원 이내